

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운영 내규

1. 기존 학과 내규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2.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내용은 필수로 정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달리하여 작성. 단, 석사학위 논문대체를 시행하는 학과에서는 제16조와 제17조를 필수로 정하여야 함
3. 기존 학과 내규가 있는 학과에서는 2번을 반영하여 작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공예디자인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공예디자인학과 석사과정과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공예전공 소속 교수들은 공예디자인학과 석·박사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과목개설)

제6조 (교·강사 배정)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제5장 자격시험

가. 종합학력시험 신청 대상자 기준과 시행방법 변경

1) 신청 대상자 기준 변경

과정	변경 전	변경 후
석사	전공 24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자
박사	전공 30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27학점 이상 취득자
통합	전공 60학점 이상 취득자	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자

2) 시행 방법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석사 : 전공 2과목 이상박사 : 전공 4과목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석사 :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박사 :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p>*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p>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필기시험 : 학과 전임교원 당 1과목 출·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필기시험 : 동일구두시험 추가 :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
합격점수	70점 이상	80점 이상

나. 면제기준 및 시행방법 변경

1)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 폐지

학과별로 성적 평균 90점 이상, 성적 평균 80점 이상 등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전면 폐지

- 시행시기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공예디자인학과는 학술 등재지 1편과 등재후보지 2편 게재, 개인전1회(공인된 화랑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시 게재인정으로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임.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예시 :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공예디자인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며 이에 따른 작품전시를 개최하며 학위논문을 연구논문으로 대체하여 작품전시와 함께 추가로 시행한다.

구 분	학위 취득 방법
학위논문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논문 작성 → 심사 · 통과
학위작품 (필수)	1. 학위작품 제작 · 교내전시관 발표
연구논문 (논문대체)	1.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이상(전공 30학점 , 연구지도 9학점)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임)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합격 3. 연구논문 작성 → 심사 · 통과

가. 학위작품과 연구논문의 정의

- 1) 학위작품 전시란 논문과 관련한 개인의 창작물을 전시하여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과 선택하여 병행한다.
- 2) 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 작성 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결과물을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는 학위논문 대체 방안을 의미함.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함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1) 학위취득 방법별 심사절차

절 차	학위논문	학위작품	연구논문
자격기준	· 자격시험(종합학력, 외국어) 통과 · 연구윤리교육 이수		동일
연구계획서	과정이수 및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고) 지도교수에게 작성 · 제출		동일
논문작성	학위논문 작성		연구논문 작성
예비발표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시행	작품발표 (교내전시관) 필수	동일
심사신청	웹정보에 심사신청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비(100,000원) 납부		논문심사비 (60,000원)
심사위원 인원	3인 (지도교수 + 교내교수 2인)		2인 (지도교수 + 교내 전공교수)
심사	심사용 학위논문		심사용 연구논문
합격 여부 판정	심사위원 3/2 이상의 찬성		심사위원장 우선
논문제출 및 등록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 겉표지 하드카바로 제본 ·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에 5부 제출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 학과로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 제작 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 ·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함 ※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2) 학위논문 대체 방안의 심사

- 연구논문은 지도교수와 1인의 교내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로 진행함.
- 연구논문과 학위작품의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함.

3) 학위 증명서 양식(인터넷 증명서용)

학위기 양식은 동일하나 인터넷 증명서 발급용 학위 증명서에는 논문 제목에 연구논문 별도
표시 예정

4) 시행시기 :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시행

- 5) 기타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학위논문 대체 시행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위취득
방법 선택학기인 2학기를 지난 3, 4학기 학생에 대해서도 학위선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
- 6) 수료자의 학점취득 필요 요건 : : 학위취득 방법을 학위논문(전공 24학점) 또는 연구논문(전공 30
학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도
록 기회 제공

수료 당시 기 전공 취득학점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추가 취득학점	수강신청 과목수 및 등록금
24학점	6학점	2과목(등록금 전액)
27학점	3학점	1과목(등록금 반액)
30학점 이상	추가 필요 없음	없음

추가 등록하여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취득 인정

- 학점취득 신청 : 매학기 소정기간(1학기 2월 초/2학기 8월 초)에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 :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신청
- 등록기간 : 정규학기 이상 등록자(미 수료자) 등록기간에 등록
- 수료자 중 연구논문 전환자의 학점취득 신청 시 수료자의 신분 및 학적상태
 - : 수료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수료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등록금을 납부하면 ‘논문대체 수강등록’으로 처리
 - : ‘논문대체 수강등록’ 한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재학생에 준해서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 시행시기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표 참조

제14조 (예비발표)

표 참조

제15조 (논문심사위원)

표 참조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표 참조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표 참조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